

2016년도 종합영량도 "1등급" 달성하자

해외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

[업무추진 프로세스 및 해외사업관리시스템 운용 중심으로]

2016. 10.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1
3. 감사 중점사항.....	1
4. 감사기간 및 인원.....	2
II. 해외사업 추진실태 점검내용.....	2
1. 해외사업 업무추진 프로세스.....	2
2. 해외사업관리시스템 운용.....	3
3. 해외 파견근무자 인력 운용.....	3
III. 감사결과.....	4
1. 총 평.....	4
2. 지적사항 총괄.....	5
3. 지적사항 요약.....	6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7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7
V. 기타사항.....	8
1. 향후 처리계획.....	8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4조(공사의 사업) 및 「정관」 제37조(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해외사업에 대하여 업무추진 프로세스 및 해외사업관리시스템 운용실태 점검
- 해외사업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 및 Risk 최소화 방안 마련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공사 해외사업 주관부서인 □□□□□□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에 대하여 업무추진 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해외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프로세스, 해외사업관리시스템 운용실태, 해외 파견 직원 인력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업무추진 프로세스 구성 및 절차의 적정성
- 해외사업관리시스템 운용의 적정성
- 해외 파견 직원 인력운영 현황

4. 감사기간 및 인원

- 2016. 9. 19. 부터 같은 해 9. 23. 까지 5일간 2명의 감사인력(연 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실시.
- 감사반 구성: 감사1부장 ○○○, 팀장 ○○○

II. 해외사업 추진 실태 점검내용

1. 해외사업 업무추진 프로세스

- 2014년부터 추진한 해외사업 현황
- 해외사업 발주기관별 업무추진 프로세스 점검
- 해외사업 추진 단계별 리스크(Risk) 관리의 적정성

점검결과

- ☞ 대부분의 사업을 1)KOICA(ODA), 2)한국수출입은행(EDCF), 3)세계은행(WB)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존하는 실정
- ☞ 프로젝트 개발에서 완료까지의 업무추진 단계별 매뉴얼 없이 경험 있는 직원의 노하우에 의존하고 있음
- ☞ 각 발주처 별 업무처리 절차가 상이하여 경험이 적은 직원이 해외사업을 수행할 경우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해외사업 추진 시 각 발주처별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사의 미래사업 확대에 따른 리스크(Risk)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1)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OECD개발원조위원회 수 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에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증여나 양허성 차관(제공 되는 현금이나 물자에 대한 채무)
- 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공적개발원조 중 유상 원조를 전담)
- 3) 세계은행(WB)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부흥과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하여 장기자금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은행

2. 해외사업관리시스템 운용

- 해외사업 수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서와 관련정보의 관리방법 점검
- 해외사업관리시스템의 데이터뱅크 역할 점검

점검결과

- ☞ 2014년 해외사업 중 일부에 대하여 MOU체결문서, 사업제안서 등 극히 소수 정보만 입력
- ☞ 2015년부터는 해외사업관리시스템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
- ☞ 직원들과의 인터뷰 결과 시스템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음
- ➔ 프로젝트별 업무처리 과정 및 관련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입력하는 등 시스템 교육 필요
- ➔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개발에서 완료까지 필요한 자료 예시를 작성하여 부서 직원이 공유하는 방안 마련

3. 해외 파견근무자 인력 운영

- 해외 파견 직원에 대한 관련 규정 적용의 적정성 확인
- 해외 파견근무자 주택임차, 의료비 지원 등의 적정성 확인

점검결과

- ☞ 숙소 제공 규정은 있으나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공관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 ☞ 보험료는 해외 파견근무자 본인에 대한 지급 규정은 있으나 의료지원 대상(동반가족), 지원방법, 보험료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지급 규정이 미비함
- ➔ 해외 파견근무자가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주택임차료 및 의료보험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감사결과

1. 총 평

해외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파견근무자 인력 운영 등에서 리스크(Risk)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사항이 도출되었다.

□□□□□에서는 해외사업영역을 양적으로 확대하며, 질적 심화를 위하여 공사 기술 우위 영역을 중심으로 공간정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실행력을 강화하고 역량확보를 위한 프로젝트관리전문가 양성 등 인적자원 경쟁력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다.

안정적인 해외사업추진을 위해 □□□□□는 다자간개발은행(MDB)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심으로 해외진출 금융재원을 다양화하여 해외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해 왔다. '16년 미주개발은행(IDB)이 발주한 우루과이 지적도 위치정확도 개선 후속사업(약 7억 원) 및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우즈베키스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약 65억 원) 수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해외사업 수주 역량 강화 및 '13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14년 스리랑카, '15년 인도네시아 등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로드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사업정보를 매년 200건 이상 제공하고, 동반성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민간기업과 해외진출동반진출체계를 구축해왔다. 그리고 공간정보 로드쇼의 성과로 '14년 36억, '15년 65억 및 '16년 현재까지 14억 원의 해외사업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13년부터 세계은행(World Bank)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공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국토역량강화모델을 수립하여 개발도상국에게 지식전수 및 사업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세계은행에 역량강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인도네시아, 튀니지, 키르기스스탄, 콜롬비아, 탄자니아 5개국에 글로벌 토지정보화 역량강화사업을 연내에 추진하여 공사의 대내외 인지도 및 글로벌사업 역량을 크게 확대할 것이다.

다만 점검결과 해외사업 추진(업무처리 매뉴얼), 해외사업관리시스템 운용, 해외 파견근무자 인력 운영 등 총 3건의 개선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에서는 해외사업 추진 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외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리스크(Risk)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원)

구분	개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현지 처분	모범 사례
		통보	시정	개선	권고	추정	회수	지급	징계	문책		
건수	3	1		2								
금액	0											

※ ()는 현지처분임.

3. 지적사항 요약

□. 해외사업 분야

2016-40
최분요구서 일련번호

해외사업 추진(업무처리 매뉴얼)에 관한 사항

< 요약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4조, 「정관」 제37조

프로젝트 발굴에서 완료까지의 업무추진 단계별 매뉴얼 없이 경험 있는 직원의 노하우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각 발주처 별 업무처리 절차가 상이하여 경험이 적은 직원이 해외사업을 수행할 경우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발주처별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16-41

해외사업관리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 요약 >

「2012. 11. 27(□□□□□-3217); 해외사업 관련 추천 연구 과제 제출」

해외사업관리시스템은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바뀌어도 시스템을 열람하면 업무처리 과정 및 관련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뱅크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2014년부터 해외사업관리시스템에 업무추진 관련문서, 수집자료를 입력하지 않는 등 해외사업관리시스템 운용을 소홀히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하지 못하였음.

2016-42 해외 파견근무자 복지(주택임차,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 요약 >

「국외사무소 운영규칙」 제26조, 제28조

숙소제공(주택임차)에 관한 절차와 기준이 없어 임의로 외교통상부예규 제217호 「재외공관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를 준용하여 주택임차료를 지급하고 있고, 보험료는 해외 파견근무자 본인에 대한 지급 규정이 있으나 의료지원 대상(동반가족), 지원방법, 보험료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지급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파견근무자가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주택임차 및 의료보험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건, 명, 원)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분요구			조치기한	감사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2016-40	본사 □□□□□□	해외사업 추진(업무처리 매뉴얼)에 관한 사항	개선			2개월	
2016-41	본사 □□□□□□	해외사업관리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통보			2개월	
2016-42	본사 □□□□□□	해외 파견근무자 복지(주택임차,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개선			2개월	

※ 처분요구: 3건<개선 3건>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목	처분내역				
	조치양정	소속	직급	성명	관련지적사항
-	-	-	-	-	-

1-2. 제도개선 처분요구 명세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조치사항	감사자
2016-40	본사 □□□□□□	해외사업 추진(업무처리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양한 해외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주처별 개발에서 완료까지의 업무추진 단계별 매뉴얼을 작성	
2016-42	본사 □□□□□□	해외 파견근무자 복지(주택임차,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해외 파견근무자가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주택임차 및 의료보험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마련	

V. 기타사항

1. 향후 처리계획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하고, 사후 이행 관리 점검 실시
- 감사결과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및 홈페이지 공시

- 붙 임 1. 지적사항 총괄 명세서 1부.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3부. 끝.

(기간: 2014. 1. 1. ~ 현재)

개선요구

제 목 해외사업 추진(업무처리 매뉴얼)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CIS 국가⁴⁾ 등 개발도상국 및 전략적 협력국가(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자메이카, 칠레, 베트남, 모로코 등)에 토지등록제도와 측량기술 수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4조(공사의 사업)에 따르면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교류·협력 및 국외 진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관」 제37조(사업) 제2항에서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에서 제1항 각호⁵⁾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4) 과거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즉 소련에 속한 나라들 가운데 12개국이 소련의 소멸과 함께 결성한 정치공동체(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그루지야)를 말함.
- 5)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에 정한 사업
 2.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호의 사업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사업
 가. 기본공간정보를 활용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사업
 나. 「국토기본법」의 국토조사를 기반으로 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사업
 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에 관한 지원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3. 지적전산 관련 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
 4.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인증기관에 관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공사의 각종 시설과 자산 활용을 통한 수익사업
 7.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사업명	국가	발주처	기간	금액
토지관리시스템 정보화 지원사업	튀니지	한국수출입은행	'14.5.~'14.11.	1.1억
종합토지정보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칠레	국토교통부	'14.6.~'14.12.	2.7억
도미니카공화국 지적청 연수사업	도미니카	KOICA	'14.10.~'14.11.	0.2억
중남미 3개국 CSR 사업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페루	KOTRA	'14.11.~'14.12.	사회공헌
토지정보 종합시스템 개발사업	베트남	KOICA	'13.8.~'15.2.	5.3억
토지정보화 세계은행 컨설팅 용역	튀니지	세계은행	'14.10.~'15.3.	0.6억
국가지적청 선진화 사업 기술지원	우루과이	미주개발은행	'14.6.~'15.5.	1.3억
2014년 러시아 사할린 한인요 현황조사 사업	러시아	국무총리실	'14.5.~'15.11.	3.0억
아프리카 2개국 CSR 사업	모잠비크 탄자니아	KOTRA	'15.4.~'15.5.	사회공헌
2015년 러시아 사할린 한인요 현황조사 사업	러시아	국무총리실	'15.7.~'16.1.	2.9억
튀니지 시범측량 및 시스템 구축 기술지원사업	튀니지	세계은행	'15.10.~'16.5.	0.3억
토지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진행중)	키르기스스탄	KOICA	'16.1.~'18.3.	7.4억
동아프리카 3개국 정책지원사업 (사업진행중)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국토교통부	'16.1.~'16.12.	1.3억
토지관리인프라 혁신마스터플랜 사업 (사업진행중)	튀니지	국토교통부	'16.5.~'16.12.	2.3억

그리고 [표1]현황과 같이 토지등록 사업, 연수교육사업, 컨설팅 사업 등의 해외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였으며 대부분의 해외사업들이 개발도상국가에 지적제도 및 측량기술을 수출함으로써 공익추구에 이바지하고 안정적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는 ⁶⁾KOICA(ODA), ⁷⁾한국수출입은행(EDCF), ⁸⁾세계은행(WB)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 6)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OECD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에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증여나 양허성 차관(제공되는 현금이나 물자에 대한 채무)
- 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를 전담)
- 8) 세계은행(WB)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부흥과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하여 장기자금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은행

[표2] 해외사업 발주처별 업무추진 프로세스

1.1. 절차		1.2. 세부내용	
1. 전략수립	수원국 국가협력전략, 중점 지원 분야 확정(우선순위)		
2. 프로젝트 발굴	수원국 정부와 현황분석을 통한 개발수요 확인 및 현지 발굴		
2. 사업제안	사업제안서 접수 및 1차 예비조사 대상사업 선정		
3. 예비조사	현지조사를 통한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기본계획 수립		
4. 사업심사	사업심사 위원회를 통한 사업 확정, 사업효과 종합적 진단		
5. 예산심의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심의		
6. 기획조사 및 RD 체결	현지조사, 당해 연도 사업 정부 간 합의문교환, 및 RD 체결		
7. 집행계획수립	사업 세부실시계획 수립		
8.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 수행	입찰공고→제안서제출→기술평가→가격평가→계약체결		
9.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 모니터링, 중간점검 및 종료 평가		
10. 사후관리	종료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1.3. 절차		1.4. 세부내용	
1. 프로젝트 발굴	수원국 및 수원기관과의 사업 컨셉 협의		
2. 프로젝트 정의 및 준비	구체화된 사업내용 및 범위 확정		
3. 차관신청	수원국→한국대사관→한국외교부→한국기재부→수출입은행 (단계별 차관신청관련 이슈사항 해결)		
4. 프로젝트 평가 및 시행	수원국 및 한국정부의 차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5. 차관협정	제안된 사업에 대한 차관 승인		
6. 조달 컨설턴트 고용	사업 조달을 위한 전문가 고용을 통한 각종평가 항목 수립		
7. 조달계약	입찰자 선정		
7. 종료	공식적인 사업종료		
8. 평가	단위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 및 성과 평가		

1.5. 절차		1.6. 세부내용	
1. 국별 지원 전략 수립	수원국 및 수원기관의 요청에 따른 국가지원 전략 분석		
2. 프로젝트 정의	구체화된 사업내용 및 범위 확정		
3. 프로젝트 준비	사업설계 및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		
4. 프로젝트 평가	세계은행 담당부서 및 전문가들의 프로젝트 평가		
5. 협상 및 이사회 승인	세계은행 및 수원국간 협상 후 최종 사업 승인		
6. 실행 및 감독	각 분야별로 사업관리 및 기성 평가		
7. 실행 및 완료	사업종료 직전 후 실행 및 완료보고서 제출		
8. 평가	세계은행 독립조직인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 분석		

그러나 KOICA(ODA), 한국수출입은행(EDCF), 세계은행(WB) 등을 통해 수주한 [표2]현황과 같이 해외사업 발주처별 업무추진 프로세스에 대하여 점검해 본 결과 프로젝트 개발에서 완료까지의 업무추진 단계별 매뉴얼 없이 경험 있는 직원의 노하우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각 발주처 별 업무처리 절차가 상이하여 경험이 적은 직원이 해외사업을 수행할 경우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발주처별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다양한 해외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주처별 개발에서 완료까지의 업무추진 단계별 매뉴얼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해외사업관리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에서는 공간정보사업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新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現 □□□□□□_2015년 조직개편 시 명칭변경)에서는 사업 수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서와 관련정보들이 개인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2012. 11. 27(□□□□□-3217); 해외사업 관련 추천 연구 과제 제출」에 따라 해외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을 실시하여 2013. 9. 16.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해외사업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은 해외사업별 관련문서(기안문, 출장명령부,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등) 및 수집자료(사업 추진에 따라 취득 된 종이문서 일체, MOU체결 문서, PPT자료, e-메일, 회의록, 명함 등)를 입력하여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바뀌어도 시스템을 열람하면 업무처리 과정 및 관련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뱅크 역할을 하여야 한다.

[표1] 해외사업별 관련자료 입력 내용

사 업 명	입력 내용	비 고
튀니지 토지관리시스템 정보화 지원사업	▶ 사업제안서	
칠레 종합토지정보구축 마스터 플랜 수립사업	▶ 최종보고서 국영문 작성 및 보완	

	▶ (MP사업) 1차 현지조사 출장 ▶ (MP사업) 사업제안서 ▶ 우루과이 기술지원사업 현지조사 출장결과	
도미니카공화국 지적청 연수	없음	
중남미 3개국 CSR 사업	▶ 공사-벨라루스 지적청 간 업무협약(MOU)	
베트남 토지정보종합시스템 개발사업	▶ 해외출장	
튀니지 토지정보화 세계은행 컨설팅 용역	없음	
우루과이 국가지적청 선진화 사업 기술지원	▶ 공사-우루과이 지적청 간 업무협약(MOU) ▶ 업무협약서(MOU) 우루과이측 보관분 발송 ▶ 우루과이 기술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14년 러시아 사할린 한인묘 현황조사 사업	없음	
2015년 러시아 사할린 한인묘 현황조사 사업	없음	
튀니지 시범측량 및 시스템 구축 기술지원사업	▶ 공사-튀니지 지적청 간 업무협약(MOU)	
키르기스스탄 토지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없음	진행중
동아프리카 3개국 정책지원사업	없음	진행중
튀니지 토지관리인프라 혁신마스터플랜 사업	없음	진행중

[표2] 해외사업관리시스템 입력 현황(화면)

그런데도 [표1], [표2]와 같이 2014년부터 해외사업관리시스템에 업무 추진 관련문서, 수집자료를 입력하지 않는 등 해외사업관리시스템 운용을 소홀히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2014년부터 실시한 해외사업에 대해 시스템에 자료입력을 하시기 바라며, 해외사업관리시스템을 내부 포털에 링크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

제 목 해외 파견근무자 복지(주택임차,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관계 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토지·공간정보 분야 한국의 선진사례 공유와 다자개발은행 발주사업 참여를 통한 해외사업 확대를 위하여 세계은행(WB)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새로운 해외사업 발굴 및 개척을 위해 해외 파견근무 직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외사무소 운영규칙」 제26조(숙소) “국외 근무직원에게는 숙소를 제공하며, 숙소 제공 이전까지는 「여비규정」에 의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8조(보장보험) “국외 근무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며 각 호는 1.국외여행자보험 2.현지 의료보험 3.현지 운전자 또는 자동차보험 4.현지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각종 보험”로 되어 있다.

[표] 해외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및 의료보험료 지급 현황

구 분		지급액	비 고
관리비-지급임차료	주택임차료	(매월) USD 2,650	적용규정: 재외공관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
관리비-보험료	보험료	(년) 3,006,800원	본인 및 가족 포함

그러나 숙소제공(주택임차)에 관한 절차와 기준이 없어 [표]현황과 같이 임의로 외교통상부예규 제217호 「재외공관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를 준용하여 주택임차료를 지급하고 있고, 보험료는 해외 파견근무자 본인에 대한 지급 규정은 있으나 의료지원 대상(동반가족), 지원방법, 보험료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지급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파견근무자가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 거주에 필요한 주택임차 및 의료보험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해외 파견근무자가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주택임차 및 의료보험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